

쫌만 기다려~~  
고객앞에서 떨지 않게  
해줄께!!

제 9장 자기앞 수표 사고신고



수신 폭격기



Q&A

## 자기앞수표의 성격

### 자기앞수표

고객들이 은행에 수표금액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수표를 사 가는 것.

-> 매매계약

특수한 수표지만, 수표법을 따른다.

지급자금은 은행의 별단예금에 예치 되어 있다.

은행은 지급인과 발행인의 자격을 겸병 하고 있다.

#### ■ 발행의뢰인과 은행과의 관계

- 발행의뢰인은 자기앞수표의 “최초 소지인”에 불과함.
- 발행의뢰인은 “지급위탁 취소”의 권한이 없음.
- 은행은 자기앞수표를 매도한 자 : 수표금을 지급할 채무자의 지위에 선다.

#### ■ 최종소지인과 은행과의 관계

- 은행은 지급인과 발행인의 자격을 겸병하는 자이므로, 지급인의 자격에서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발행인의 자격에서는 상환의무를 부담한다.
- 따라서 지급거절로 인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수표금청구소송의 “피고”의 위치에 선다.
- 은행은 소구의무자이며, 이득상환의무자이다.

# 자기앞 수표 사고신고 의의

핵심요약



본강의



자기앞수표의 사고신고

## ▶ 자기앞수표의 사고신고 의의

사고신고는 ‘**자기앞수표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**’과 ‘**지급할 때 주의하라**’는 주의적 경고에 불과하다. - **지급시 은행의 주의의무 가중**



사고신고된 수표의 지급 여부는 전적으로 은행이 판단해야 할 문제!

- ✓ 소지인출급식 수표로 발행된 이상 소지인에게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
- ✓ 수표금 청구소송에서 은행이 패소할 경우 자연배상금, 소송비용 등 부담.

=> **자기앞 수표 소송보증금 (소송비용을 예치받고, 사고신고인을 위해 소지인의 수표금청구 거절)**

## ▶ 자기앞수표의 사고신고 사유

- 분실, 도난, 멸실 -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절차
- 피사취
- 계약불이행
- 위조, 변조 - 은행의 지급금액의 판단기준  
-> **피변조자는 변조 전 문언에, 변조자는 변조 후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짐**

# 자기앞 수표 사고신고 흐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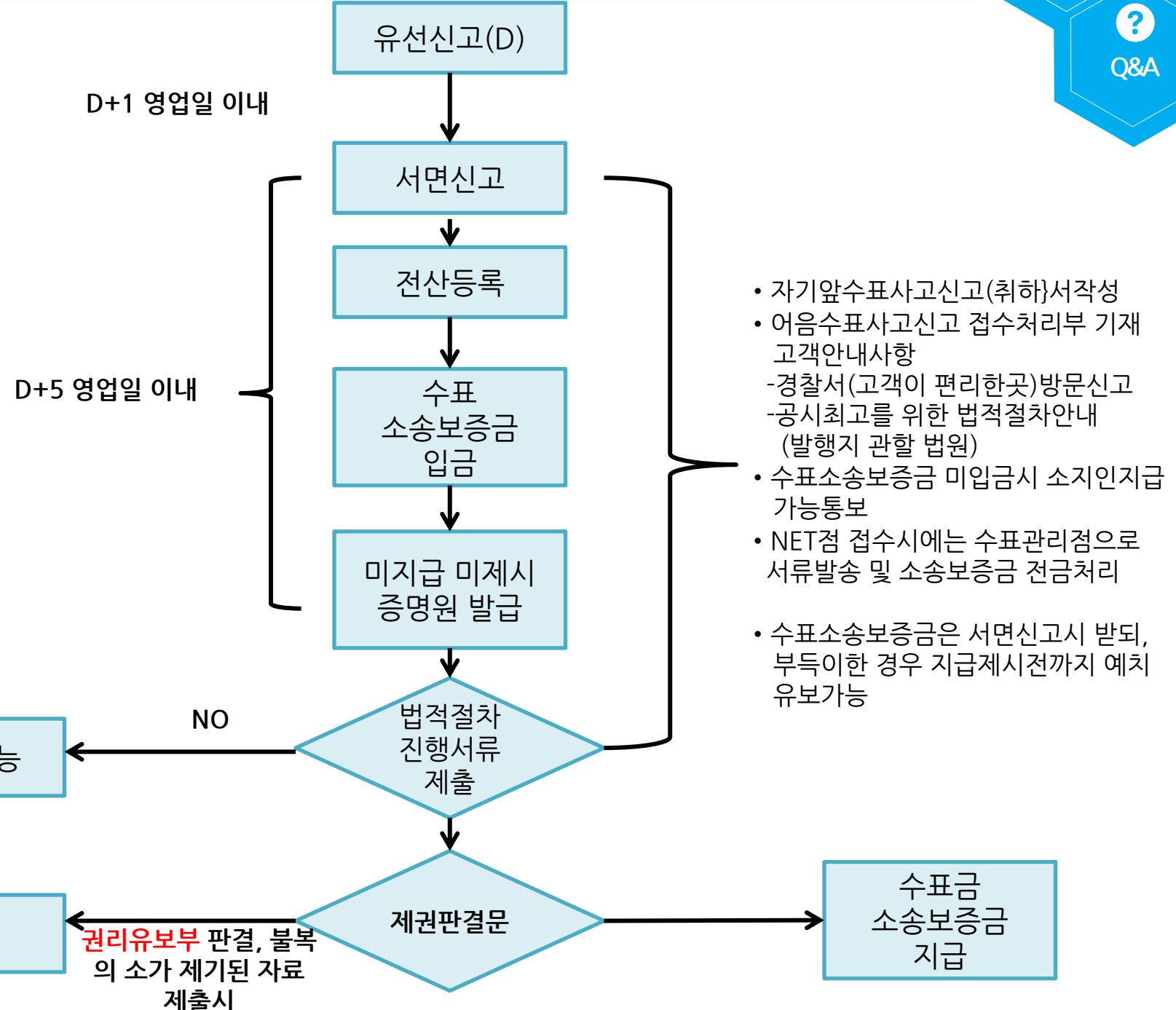
핵심요약



본강의



Q&A



# 분실.도난에 의한 사고신고

핵심요약



본강의



## ★ 서면접수 순서

- ① 자기앞수표사고신고(취하)서 접수 즉시 전산등록 한다
- ② 자기앞수표소송보증금을 별단예금에 입금한다
- ③ 미지급(미제시)증명원 발급 한다
- ④ [어음.수표 사고신고 접수처리부] 기재 한다
- ⑤ 5영업일 이내 공시최고 접수증명을 당행에 제출토록 안내하고  
미제출시 최종소지인에게 지급하게 됨을 안내한다

### ☞ NET점 접수 시

- ① 위 1)접수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한다

## ★ 고객 안내사항

- ① 가까운 경찰서에서 분실접수하도록 안내한다.
- ② 자기앞수표 발행지 관할 법원에서 공시최고 접수를 하도록 안내한다.
- ③ 5영업일(초일불산입)이내 공시최고 접수증명을 당행에 제출토록 안내한다.  
(주의: 미제출시에는 최종소지인에게 수표금이 지급될 수 있음을 추가안내)
- ④ 향후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제권판결문을 은행에 제출하여 수표금지급을 받도록 한다.

# [참고]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

핵심요약



본강의



Q&A

## 1) 공시최고란?

공시최고제도는 법원이 “일정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시키되, 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어음수표의 실권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원의 효과”이다.

공시최고절차는 공시최고 신청절차의 제조건을 법원내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한다.

## 2) 제권판결이란?

법원에서 공시최고를 한 후 일정기간내에 권리를 신고케하여 이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어음·수표의 무효화와 어음·수표상 채무자에 대하여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을 부여하는 법원의 판결을 말한다.

① **소극적효력** : 제권판결을 선고하면 어음·수표로서의 효력을 잃는다. 따라서 정당한 소지인(선의취득자 등)이라 하더라도 수표금을 청구할 수 없다.

## 3) 적극적효력

①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그 어음·수표 없이도 어음·수표금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어음, 수표 분실(도난)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형식적 자격을 인정할 뿐 실질적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.

### ▪ 권리유보부 제권판결 예시

“별지목록기재 증권에 대하여 000가 신고한 **권리를 보류하고** 증권의 무효를 선고한다”

### ▪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

- 제권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의 불변 기간내
- 제권판결을 선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

▪ 제권판결이 있더라도 **권리유보부 제권판결,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보류하여야 한다.**

# 공시최고 신청서와 공시최고 접수증명원

핵심요약



본강의



Q&A

## 공 시 최 고 신 청

신청인 이 봉 풍  
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

### 무효신고를 구하는 증권의 표시

- 수표
- 기호번호
- 액면금액
- 발행년월일
- 발행지
- 발행인
- 지급지
- 지급인
- 최종소지인

### 신 청 취 지

위 수표에 대하여 공시최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신 청 이 유

신청인은 위 수표의 최종소지인으로서 ○○○○ 길 위에서 분실하였으므로 즉시 관할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아직 찾지 못하였으므로 증서의 무효신고를 위한 공시최고를 신청합니다.

### 첨 부 서 류

- |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|----|
| 1. 분실신고접수증명서 | 1통 |
| 1. 미지급증명서    | 1통 |

2000 . . .

위 신청인 이 봉 풍 (인)

서울지방법원 귀중

## 접 수 증 명 원

### 별지목록 기재증권에 대한

공시최고 신청이 서울지방법원에 카 공 호로 접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----+

| 인 지 | 서기 200 년 월 일

| | 신청인

-----+

서울지방법원 귀중

위의 서류 통을 200 년 월 일 시에 틀림없이  
영수하였습니다.

200 . . .

영수인

사고신고접수 후 5영업일 이내 동 접수증명원을 접수

# 제권판결문 VS 권리유보부 제권판결문

핵심요약



본강의



Q&A

사건 2007나○○○ 공시최고

## 제권판결

신청인 △△△

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○○

주문 말미목록기재 증권의 무효를 선고한다.

이유 말미목록기재 증권에 대하여 2007년 1월 28일 공시최고를 신청하였는 바, 그 공시최고에서 정한 2007년 4월 28일 10시까지 권리의 신고나 청구 및 증서를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07. 5. 3.

서울지방법원 ○○지원  
판사 ○○○(인)

종류 자기앞수표

발행인 ○○○

번호 아가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

지급장소 ○○은행 ○○지점

금액 금5,000,000원

최종소지인 △△△

발행일 2007년 1월 25일

사건 2007카○○○

## 제권판결

신청인 △△△

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○○

주문 별지목록 기재증권에 대하여 신고인 □□□(주소)가 신고한 권리를 보류하고 위 증권의 무효를 선고한다.

이유 별지목록 기재증권에 대하여 2007년 1월 28일 공시최고를 하였는 바, 2007년 4월 8일 신청 외 □□□로부터 권리신고가 있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07. 8. 22.

서울지방법원 ○○지원  
판사 ○○○(인)



감사합니다.